

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0000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2025. 1. .
제출자 김기남 의원

1. 제안이유

- 「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가 일부개정됨에 따른 2025년 1월 1일자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맞추어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정비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관한 사항 일부 변경(안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)
 - 부서의 신설, 폐지,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: 붙임 참고
- 나. 조례안 예고기간 : 2025. 02. . ~ 2025. 02. .
- 다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라. 그 밖의 사항
 - 1) 부서협의 : 해당없음
 - 2) 관련부서 : 해당없음

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2호가목 중 “홍보담당관, 감사담당관, 정보통신담당관”을 “홍보기획관, 감사관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호 타목(중전의 카목) 중 “김포산업진흥원”을 “김포산업지원센터”로 한다.

다.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
제4조제2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하고,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바목까지로 하며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호 사목 중 “클린도시사업소”를 “맑은물사업본부”로, “아목”을 “사목”으로 하며, 같은 호 아목 중 “도시안전정보센터”를 “공원도시사업본부”로, “차목”을 “아목”으로 한다.

가. 안전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나. 미래전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생 략)</p> <p>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행정복지위원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<u>홍보담당관, 감사담당관, 정보통신담당관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다. ~ <u>차</u>.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카. <u>김포산업진흥원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 <이전 타목에서 이동 2022.2.11.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타. (생 략)</p> <p>3. 도시환경위원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<u>안전담당관</u></p> <p><신 설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~ <u>마</u>.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바. <u>맑은물사업소</u> 소관에 속하는</p>	<p>제4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<u>홍보기획관, 감사관</u>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다. <u>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라. ~ <u>칸</u>. (현행 다목부터 차목까지와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타. <u>김포산업지원센터</u>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파. (현행 타목과 같음)</p> <p>3.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<u>안전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<u>미래전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다. ~ <u>바</u>. (현행 나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음)</p> <p><삭 제></p>

사항 <이전 사목에서 이동 2024.2.28.>

사. 클린도시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<이전 아목에서 이동 2024.2.28.>

아.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<이전 차목에서 이동 2024.2.28.>

자. (생략)

사. 맑은물사업본부 -----
----- 사목-----

아. 공원도시사업본부 -----
----- 아목-----

자. (현행과 같음)

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4. 2. 28.] [경기도김포시조례 제2120호, 2024. 2. 28., 일부개정]

경기도 김포시(의회사무국), 031-980-2530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에 따라 김포시의회 교섭단체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1.12.31.>

제2조(교섭단체의 구성)

- ① 김포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3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 다만,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-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·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.
-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조의2(교섭단체의 기능)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과 정당정책의 추진
2.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수렴 및 조정
3.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
4. 소속 정당과의 교류 및 협력
5.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

제2조의3(지원) 의장은 제2조의2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,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<개정 2024.2.28.>

제3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.

1. 의회운영위원회 : 7명 이내
2. 행정복지위원회 : 7명 이내
3. 도시환경위원회 : 7명 이내

제4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

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관한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.

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

1. 의회운영위원회

가.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

나.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다.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

2. 행정복지위원회

가. 홍보담당관, 감사담당관,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<개정 2021.2.19., 2022.11.16., 2024.2.28.>

나.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<개정 2024.2.28.>

다. 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<개정 2021.2.19.,2024.2.28.>

- 라. 교육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<개정 2021.2.19.,2024.2.28.>
- 마. 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개정 2024.2.28.>
- 바.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<개정 2024.2.28.>
- 사. 읍면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<개정 2021.2.19.><이전 아목에서 이동 2022.2.11.>
- 아.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<개정 2021.2.19.><이전 자목에서 이동 2022.2.11.>
- 자.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<개정 2021.2.19.><이전 차목에서 이동 2022.2.11.>
- 차.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<개정 2021.2.19.><이전 카목에서 이동 2022.2.11.>
- 카. 김포산업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<개정 2021.2.19.><이전 타목에서 이동 2022.2.11.>
- 타. 김포FC 소관에 속하는 사항<신설 2021.2.19.><이전 파목에서 이동 2022.2.11.>

3. 도시환경위원회

- 가. 안전담당관
- 나. 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<개정 2021.2.19.,2022.11.16.,2024.2.28.>
- 다. 교통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<개정 2021.2.19.,2022.11.16.>
- 라. 도시주택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<개정 2021.2.19.,2022.11.16.>
- 마.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<개정 2022.11.16.><이전 바목에서 이동 2024.2.28.>
- 바.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<개정 2021.7.30.,2022.11.16.> <이전 사목에서 이동 2024.2.28.>
- 사. 클린도시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<개정 2022.11.16.><이전 아목에서 이동 2024.2.28.>
- 아.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<개정 2022.2.11.,2022.11.16.> <이전 차목에서 이동 2024.2.28.>
- 자.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<신설 2022.2.11.,2022.11.16.> <이전 카목에서 이동 2024.2.28.>

제5조(상임위원회의 위원)

-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(이하 “상임위원”이라 한다)이 된다. 다만,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.
- ②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각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있다.
-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.
- ④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.

제6조(상임위원의 임기)

-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. 다만, 전국동시지방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.
-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상임위원회 위원장)

-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(이하 “상임위원장”이라 한다) 1인을 둔다.
-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.
-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.
-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제8조(특별위원회)

-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, 기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-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<개정 2021.12.31.>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제3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수로 한다.<개정 2021.12.31.>
- ⑤ <삭제 2021.12.31.>

제9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

-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,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
-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,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의 선임)

- ①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-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.
-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

제11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,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.

제12조(부위원장)

-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.
-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
-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
-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, 최다선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해당 회기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<신설 2016. 10. 31.>

제13조(소위원회)

-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14조(회의규칙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,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김포시의 회 회의 규칙」으로 정한다.